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8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전진숙·김선민·임호선

이기헌 · 박희승 · 김 윤

김원이 · 남인순 · 김남희

김정호 · 김윤덕 · 권칠승

유후덕 • 이용우 • 서영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 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질평가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8조의12(의료질평가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
	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
	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
	는 시스템(이하 "의료질평가통
	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질평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질평
	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질평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